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22.7월)에 따라, 해운법 상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비상설 조직으로 전환될 예정인 바, 시행령 상 불필요하게 된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위원회 비상설화 시행 시기에 맞춰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영 제6조 제3항을 삭제)

-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가 비상설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됨에 동시에 관련 “해운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객선 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

나. 기존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법 시행(‘24.5.1.)에 맞춰 임기가 종료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6조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 전 위촉된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일에 종료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제6조(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영 시행 전 위촉된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일에 종료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연 락 처	(044) 200 - 5733